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6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김종양ㆍ서천호ㆍ박성훈

이종욱・고동진・나경원

조승환 · 최수진 · 정연욱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, 현행법을 개선·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 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 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제2항).

나. 출자・출연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, 비위행위자

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없도록 하는 등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(안 제10조).

다.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·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(안 제34조의2)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0조의3"을 "제10조(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10조의3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기 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0조의 제목 "(임원의 결격사유 등)"을 "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없다"를 "없으며,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제4호 중 "제9조제4항"을 "제9조제4항,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30조제3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"를 "임원이 제1항 각 호(제2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 또는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에"로, "그"를 "제1항 각 호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 경우 "공무원"은 "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"으로 본다)
- ③ 직원이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당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-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출자·출연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의2 중 "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"를 "임직원에게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"로 한다.

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"을 "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, 감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직무와 관련된 사건

- 2.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
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- 3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임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출자·출연 기관의임직원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·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출자·출 연 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의

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• ②	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• ②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	③	
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		
해서는 제9조, <u>제10조의3</u> , 제11	<u>제10</u> 조(직원에 관한	
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	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10조의3	
15조의2, 제15조의3, 제16조, 제		
17조, 제17조의2, 제17조의3, 제		
18조제3항·제4항, 제19조 및		
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		
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	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		
외로 한다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	
제9조(임원) ① (생 략)	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출자・출연 기관의 임원(지	②	
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		
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		
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		
로 임명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「지방자치법」</u>	
	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	
	를 실시하여 기관장을 임명하	

③ ~ ⑤ (생 략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출자・출연 기 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(생략)
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
-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

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| 제1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 ①

-----없으며, 제2호에

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・출연기 관의 직원이 될 수 없다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 경우 "공무원"은 "출 자・출연 기관의 임직원"으로 본다)

<삭 제>

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4. 제9조제4항,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30조제3항제1호----② 임원이 제1항 각 호(제2호 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 또 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·출연 기관의 <u>임원에게</u>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6호

-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 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
 - --제1항 각 호----.
 - ③ 직원이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 나 임용 당시 제1항제2호에 해 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 -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<u>퇴직한 임직원이</u>퇴직 전에 관 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 •출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 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 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|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 출자・출연기 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의2(벌금형의 분리 선고) 제10조의2(벌금형의 분리 선고)

----임직원에게

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 합범(競合犯)에 대하여 벌금형 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 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.

등 개시・종료 통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은 출자・출연 기관의 임직 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 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 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 일 이내에 출자・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원
- 2.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 기관
- 3. 지방자치단체의 장

의2	또는	제6호의3에	규정된
죄			
<u> </u>			

제34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제34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・종료 통보) 검찰・경 찰 등 수사기관, 감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・출 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건-----

- 1. 직무와 관련된 사건
- 2.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 위와 관련된 사건
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』 제4조 에 따른 금지행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3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

대한 불응